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2673호
- 다. 제출일자: 2021. 8. 11.
- 라. 회부일자: 2021. 8. 18.

2. 제 안 사 유

- 서울시에서는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강서·양천·구로·금천구) 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에 2개 센터(양천구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 소재)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중 양천구 신월동에 소재한 서남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3개 분소 포함)가 금년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센터 운영 현황

구 분	서남권 센터				고척동 센터
	신월동본소(총괄)	강서분소	구로분소	금천분소	
위 치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2층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9 덕용빌딩 302호	구로구 구일로4길 46 현대연예인(아) 상가동 116호	금천구 벚꽃로60 라이프(아) 상가동 2층 102호	구로구 고척로 51나길 25
사무실 면적	231.4㎡ (사무실, 상담실, 홍보관으로 구성)	48㎡ (사무실, 민원 상담실로 구성)	18.8㎡ (사무실겸 민원 상담실로 구성)	46.9㎡ (사무실, 민원 상담실로 구성)	52㎡ (사무실, 민원 상담실로 구성)
수탁기관	(사)항공기소음				(사)항공기소음피해 대책위원회
위탁기간	'19.1.1.~'21.12.31. (최초 : '16.11.18 ~'18.12.31)	'20.8.25.~'21.12.31.			'20.9.1~'22.12.31
인 력	센터장1, 사무국장1, 연구원1, 민원상담1	분소장1, 사무지원1	분소장1, 사무지원1	분소장1, 사무지원1	센터장1, 사무지원1
연소요예산	448백만원	139백만원	139백만원	139백만원	165백만원
비 고	재위탁 동의 대상				

나. 주요 추진사업 (최근3년, 2019년~2021년 6월)

- 항공기 소음에 관한 민원 및 피해에 대한 상담
-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 공항소음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 공항소음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 피해지역 주민과 소통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 등

다. 재위탁 추진 내용

- 위탁기간: 3년(2022.1.1.~2024.12.31.)
 -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 위탁사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사무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요예산: 8억 6천5백만원/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경쟁(재위탁)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신 규(공모): '16.11.18.~'18.12.31 (사)항공기소음
 - 2차 재위탁(공모): '19. 1. 1.~'21.12.31 (사)항공기소음

마.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불만사항,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사업 안내, 관련법령 설명 등 공항소음 민원 접수·처리 및 정보제공 필요
- 해외사례 등의 조사·연구와 주민 자문위원회, 주민토론회, 사업보고회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개선사업(정책개선안 마련 및 법률개정 청원 등) 추진 필요

- 공항소음 피해 지역민들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수년간의 누적된 불신이 있으므로,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민들과 공항소음 관련 활동을 해 온 지역기반 공항소음전문 활동 단체에서 사업 추진 필요
- 항공기 소음측정 및 분석 관련 전문적인 기술, 측정자격, 경험 등이 필요하므로 소음 전문단체에서 센터 운영 필요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21.6)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서울시는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강서·양천·구로·금천구)에 2016년부터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주민의 접근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2개 센터(서남권, 고척동)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중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남권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강서·구로·금천 분소 포함)의 민간위탁 기간 3년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현황>

구 분	서남권 센터				고척동 센터
	신월동본소(총괄)	강서분소	구로분소	금천분소	
위치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강서구 가로공원로767길 9	구로구 구일로4길 46	금천구 벚꽃로60	구로구 고척로 51나길 25
사무실면적	231.4㎡	48㎡	18.8㎡	46.9㎡	52㎡
수탁기관	(사)항공기소음				(사)항공기소음피해 대책위원회
위탁기간	'19.1.~'21.12. (최초: '16.11.~'18.12.)	'20.8.~'21.12.			'20.9.~'22.12
인력	센터장1, 사무국장1 연구원1, 상담1	분소장1 사무지원1	분소장1 사무지원1	분소장1 사무지원1	센터장1 사무지원1
소요예산	448백만원/년	139백만원/년	139백만원/년	139백만원/년	165백만원/년
비고	재위탁 동의 대상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피해 상담, 항공기소음 측정사업, 공항소음 조사·연구·정책개발 사업, 공항소음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제2항¹⁾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검토 의견

1)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공항소음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1)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2)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음.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연간 소요예산 8억 6천5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결과가 누락²⁾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2021년 8월 27일, 산출근거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일체를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제출하였음.

3)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본 주민지원사업은 2021년 6월에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³⁾, 이를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적정⁴⁾으로 결론지은 바 있음.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공모)사업의 경우,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2021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비고
환경정책과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사무/ 재위탁(공모)	3년	적정	

4)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 제출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출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⁵⁾에 따르면, 사업 확대에 의해 서남권 주민지원센터는 1센터 3분소로 조직이 확대·개편됨에 따라 센터와 분소 간 업무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업무분담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센터와 분소 간 비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인력운용으로 인해 분소의 자체적인 행정처리 및 업무종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된 바, 향후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시 이를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3)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환경정책과-8822, '21.6.22.)

4) 2021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환경정책과)(조직담당관-8664, '21.8.5.)

5)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서남권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사업(2021.04., 서울특별시)